

실효성없는 法으로 환경보전 안된다

우리 나라 전국 곳곳에서 건설과 개발, 수출의 깃발이 휘날리던 1969년 경제장관회의석상에서의 일이다. 안건은 이미 6년전 만들어 놓았던 공해방지법의 시행령 制定의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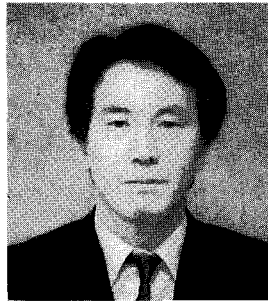
명목상 立法은 하였으되 실제 시행의 의사는 없었기 때문에 3공화국 행정부는 그 시행령제정을 차일피일 미뤄오고 있었다. 이러다가 언론이 한차례 소동을 떠 끝에 당시 주무부처인 보건사회부가 가까스레 시행령 안을 만들어 경제장관회의에 상정하였던 것.

그러나 당시 경제기획원 장관이었던 金鶴烈부총리는 안건 제목만 보고 대뜸 호통을 쳤다.

“어느 돌대가리가 이따위 案을 만들었어. 지금이 어느 땐데 이런 한가한 발상을 하고 있나”

연간 수출이 몇억불 늘었나, 국민 소득은 몇달러 늘었나 하는 식의 숫자에만 매달려있던 당시 경제관료들의 사고방식을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다.

그로부터 20년. 보건사회부



金秀鳳
(서울방송 사회부기자)

의 한 課에 불과하던 행정조직이 당당히 정부의 한부처로 성장했으며 다루는 법만해도 10개 法律에 달하며 전국의 지방환경청을 포함해 천5백명 가까이 된다.

이번에는 차관회의석상. 때는 낙동강상류에서 일어난 ‘페놀颱風’이 온국토를 일차 휩쓸고 간 올해 4월중순.

안건은 공해범죄에 대한 처벌을 획기적으로 강화한 ‘환경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의 건.

형량도 크게 높아졌지만 공해 피해의 입증책임을 전통적인 법원리에서 벗어나 기업주측이 ‘가해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경제부처의 반대가 상당하리라고 예상되던 상황이었다. 이

에 따라 환경처의 범무담당직원들도 법제정의 타당성을 설명해주는 자료를 한보따리 싸 들고가 대기중이었다. 그러나 결과는 변호사 출신의 체육부 차관이 약간의 시비를 걸었을 뿐 무사통과 되었다. 물론 이 법은 20년전 日本이 만든 공해 범죄처벌법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베낀 것이지만 어쨌거나 지난 20년간 우리도 엄청나게 변한 것이다.

비난여론의 표적이 됐던 두산전자에 대한 조업정지처분은 보름만에 경제계 요청을 받아들여 집행정지한 예에서 보듯 아직 환경은 개발이 하위개념이며 종속돼 있다. 그러나 89년도 부터 시작해 매년 한차례씩 큰 물파동을 겪으면서 국민적 관심을 바탕으로 국가의 힘이 환경부문에 주어지기 시작했다는 것 또한 부인하기 어렵다.

작년 8월 국회에서 통과된 환경기본 6법이 올 2월 시행된 지도 채 몇달 안지났는데도 각법률에 대한 개정작업이 활발히 진행되는 점만 봐도 그렇다.

요즘 환경처에서는 연일 法, 시행령, 시행규칙, 각종

고시에 관련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여간해서는 아예 기자들의 관심을 끌지도 못한다.

이러한 환경 法制뉴스의 홍수속에서 필자는 가끔 이러한 法律들이 실효성을 가지고 집행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기도 한다.

立法을 함에 있어서는 크게 두가지 서로 다른 요소가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 그것은 법학에서 쓰는 말로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안정성」의 요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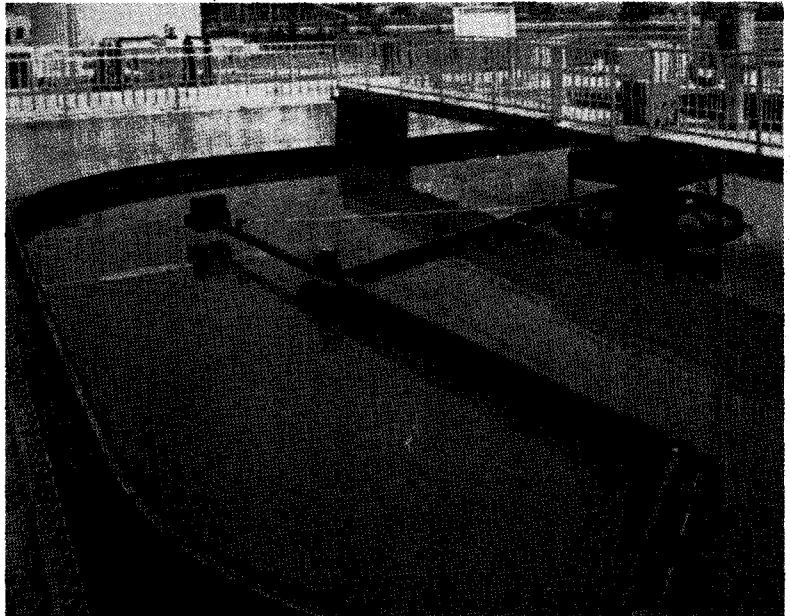
즉 현실의 어떤 특정한 사안에 가장 적합하여야 하면서 또 다른 측면에서 法은 일정한 틀을 유지함으로써 그 社會 구성원들이 그 法을 준거로 하여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하루가 다르게 세상이 변한다고 해서 정말 법이 매일 바뀐다면 그 法을 지키고 따를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작년 8월에 만든 法律, 아직 시행규칙도 갖추지 못해 제대로 시행도 되지 못한 상태에서 法이 다시 改正되는 상황은 법질서 측면에서 보면 분명 하나의 혼란이다.

특히 바뀌어진 각종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대규모 장치나 시설의 개선과 확충을 해야하는 기업측에서는 당분간 상당한 혼선이 일어나리라는 점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현실과 동떨어진 法制는 그



**오염방지를 위한 규제와
단속 임무를 맡는 환경행정과
그 근거 法制는 무엇보다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
잡으면 어떤 기업이라도
잡아 넣을 수 있다는 式의
법체제로는
우리 '환경의 길'을
향상시킬 수 없다.**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결국 法과 현실의 괴리를 부정 부패가 채우고 만다는 사실은 3, 4, 5공화국을 통해 우리는 뼈저리게 체험했다.

지난 30년동안 개발독재 체제속에서 억눌려 왔던 국민의 환경욕구가 민주화와 더불어 분출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맑은 물을 위한 노력이 빨갱이짓으로 치부되고 공해추방을 외치던 학자들을 투

옥시키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 더욱더 큰 목소리로 '환경'을 외쳐 봄직도 한 일이다.

그러나 중병에 신음하고 있는 이 강산의 물과 공기를 死文化된 법조문이 되살려 놓지는 못할 것이다. 온 국민의 깨어있는 환경의식과 적극적인 공해추방 운동에의 확대가 가장 중요한 일일 것이다.

그 다음 오염방지를 위한 규제와 단속 임무를 맡는 환경행정과 그 근거 法制는 무엇보다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 잡으면 어떤 기업이라도 잡아 넣을 수 있다는 式의 법체제로는 우리 '환경의 길'을 향상시킬 수 없다.

法이 바뀔때는 그 法시행에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주고 일단 시행되면 재벌기업이든 영세기업이든 차별 없이 공평하게 처리해야 진정한 환경보전의 첩경이라 할 것이다. ◀